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88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이재관 · 윤준병 · 주철현
권향엽 · 김승원 · 이수진
강준현 · 문진석 · 이상식
이정문 · 김영환 · 장종태
김원이 · 장철민 · 문대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인력 확보 한계 등으로 여전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

조부터 제3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6장(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7조(중전의 제34조)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제6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제3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의 설치)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

4.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u> <u>지원기금</u>
<u><신 설></u>	<u>제3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u> <u>환지원기금의 설치) 정부는 미</u> <u>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u> <u>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u> <u>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u> <u>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u> <u>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u> <u>다)을 설치한다.</u>
<u><신 설></u>	<u>제3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u>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u> <u>조성한다.</u> <u>1. 정부의 출연금</u> <u>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u> <u>기부금</u> <u>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u> <u>의 전입금</u> <u>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u> <u>익금</u> <u>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u> <u>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u> <u>터의 예수금</u>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

4.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

	<u>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u> ② <u>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u>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u> ④ <u>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6장 보칙</u> <u>제33조</u>(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생략) <u>제34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u>제33조</u>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제7장 보칙</u> <u>제36조</u>(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제33조와 같음) <u>제37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u>제36조</u>----- ----- ----- ----- -----.